

● **환경부고시 제2022-282호**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의6제1항에 따라 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2월 30일

환경부장관

2023년도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반영계수

반영계수는 0.3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